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교육위원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특수학교 학급 등 설치기준 하향 조정 등〉
■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774호)

2026. 9.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신 문 근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국가등의 업무에 특수교육교원의 확보 추가	3
2. 특수교육대상자의 원격수업을 위한 학교장의 시책 수립 등	8
3. 특수학교 학급설치 기준 하향 조정	15
4. 특수교육교원 배치기준 변경 등	20
5. 개정안 부칙	26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예지 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 2026. 3. 26.

3. 회 부 일 : 2026. 3.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등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생 수 대비 특수교육교원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특수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특수교육교원의 과도한 업무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 2024년 10월,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과밀 특수학급으로 인해 과도한 수업시수에 시달리던 특수교사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여전히 과밀 특수학급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특수교육대상자와 특수교육교원 모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나아가 코로나19 시기 원격수업이 이루어졌지만, 특수교육대상자는 비장애인 중심의 원격수업 환경에서 소외되는 등 큰 어려움을 겪은

바 있음. 향후 원격수업이 일어날 때를 대비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원격수업을 위한 별도의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 특수교육교원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원격수업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특수학급 등의 설치 기준을 강화함과 함께 특수교육교원의 배치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여 효과적인 특수교육을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5호, 제21조제5항·제6항 신설, 제27조 및 제27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국가등의 업무에 특수교육교원의 확보 추가(안 제5조)

가. 개정안의 요지

-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법정 업무를 규정하면서 그 중에는 특수교육교원의 양성 및 연수도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특수교육교원의 확보를 포함시키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①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특수교육교원의 <u>양성</u> 및 연수	5. ----- <u>확보</u> · <u>양성</u> -----
6. ~ 12. (생략)	6. ~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특수교육교원은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으로¹⁾, 현행법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²⁾
- 이에 따라 법 시행령에서는 특수교육 담당 교사는 학생 4명마다 1명으로 규정하고 있고, 도시와 농촌·산촌·어촌 교육의 균형발전,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현황,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및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배치기준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³⁾.
-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공립 특수교육교원 현황⁴⁾을 보면, 특수교육교원의 법정정원 대비 배정정원의 비율이 2022년 91.7%에서 2026년 80.5%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교육당국은 매년 심화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특수교육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말한다.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③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배치하는 특수교육 담당 교사는 **학생 4명마다 1명으로 한다.** 다만, 도시와 농촌·산촌·어촌 교육의 균형발전,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현황,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및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현황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별 교사는 교육부장관이, 단위 학교·학급별 교사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배치기준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배치할 수 있다.

4) 국립 특수교육교원의 경우 2026년 법정정원(293명) 대비 배정정원(385명)이 더 많이 배치되어 있고, 사립의 경우 법정정원(3,184명) 대비 현원(4,081명)이 더 많이 채용되어 있음.

[국립 특수교육교원 현황(2024년~2026년)]

되고 있는 특수교육교원의 구조적 부족 문제를 기간제교사 배치를 통해 해소하고 있는 실정임.

[공립 특수교육교원 현황(2022년~2026년)]

(단위: 명)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
특수교육대상자 수 ^①	73,032	77,914	82,729	87,317	90,838
특수교육교원 법정정원(A) ^②	18,258	19,479	20,683	21,830	22,709
특수교육교원 배정정원(B) ^③	16,737	16,795	17,161	17,625	18,281
B/A	91.7	86.2	83.0	80.7	80.5
특수교육교원 현원(C)*	18,929	19,360	20,614	21,769	23,040
C/A	103.7	99.4	99.7	99.7	101.5

자료 : 교육부

①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공립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배치된 학생 수

②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

* 학생 4명마다 교사 1명

③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실제 배정한 인원으로 특수학교(급)에 배치된 특수교사에 한함(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는 제외)

(단위: 명)

구 분	2024	2025	2026
특수교육대상자 수 ^①	1,058	1,138	1,172
특수교육교원 법정정원(A) ^②	265	285	293
특수교육교원 배정정원(B) ^③	378	378	385
B/A	142.9	132.9	131.4
특수교육교원 현원(C)	362	377	387
C/A	136.9	132.5	132.1

① 국립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배치된 학생 수

②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 학생 4명마다 교사 1명

③ 교육부에서 각급학교로 배정한 인원으로 국립 특수학교(급)에 배치된 특수교육교원

※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특수교육교원은 50% 범위 이내에서 가감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국·공·사립 모두 장애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대부분인 특수학교에 특수교육교원을 추가로 배치하고 있음

[사립 특수교육교원 현황(2024년~2026년)]

(단위: 명)

구 분	2024	2025	2026
특수교육대상자 수 ^①	12,174	12,450	12,735
특수교육교원 법정정원(A) ^②	3,044	3,113	3,184
특수교육교원 현원(B) ^③	4,093	3,990	4,081
B/A	134.5	128.2	128.2

① 사립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배치된 학생 수

②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 학생 4명마다 교사 1명

③ 사립 특수학교(급)에 배치된 특수교육교원 현원 기준

- 발달지체 및 자폐성장애 학생의 증가, 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의 증가, 통합교육에 따른 일반학교 일반학급 배치 증가로 특수교육대상자는 계속해서 증가⁵⁾하고 있어 특수교육교원의 법정정원도 증가하고 있는바, 교육부는 이를 반영하여 매년 특수교육교원의 배정정원을 관계부처(기획예산처,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있으나 공립 특수교육교원의 경우 법정정원 보다 부족하게 확보되고 있는 상황임.⁶⁾
- 현재 특수교육교원 법정정원의 기준이 되는 배치기준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특수교육교원 확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법정 업무로 규정하는 경우 법정정원 확보에 대한 법적 강제력이 보다 높아지게 될 것으로 보이고, 법정정원 대비 특수교육교원의 배정정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다만, 2025년도 기준 공립 특수교육교원 법정정원 대비 배정정원 부족 인원이 4,205명인바, 개정안의 경우 인력 충원 가능성 및 충원되는 인원의 향후 재정소요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또한, 현재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은 시행령에서 학생 4명당 특수교육 담당 교사 1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5) 동 요인들은 내적 요인으로, 외적 요인의 경우 **사회환경 요인**(초혼연령, 첫째아 어머니의 평균 출산연령, 합계출산율), **건강에 대한 관심과 태도 변화 요인**(건강검진 수검자 비율 등), **일반 학생의 특성 요인**(다문화 학생 수, 건강 이상 아동 비율 등), **특수교육 연건 변화 요인**(특수교사 1인당 특수교육대상자수, 총 교육예산대비 특수교육예산 비율, 치료지원 이용 학생 비율 등), **특수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 요인**(장애이해교육 실시 비율 등),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관련 요인**(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 및 선정 등)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남(특수교육대상자 증가 요인 분석 연구, 국립특수교육원, 2024).

6) 사립학교의 경우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법정 채용인원은 국공립과 동일하게 특수교육대상자 4인당 1인이나, 사립 특수교육교원은 정원 확보 후 배정된 교원을 교육청에서 배치하는 구조가 아닌 사립학교 법인의 개별 채용으로 이루어짐.

안 제27조의2에서 특수교육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 2인당 1인으로 하면서 법에서 배치기준을 규정하려는 바, 특수교육교원 법정정원은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여 공립 특수교육교원 배정정원 부족 문제는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국립과 사립 특수교육교원의 경우도 부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한 관련기관의 의견]

<교육부>

- 특수교육교원의 확보만을 별도의 법률에서 예외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 법체계 등을 고려한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임.

<행정안전부> 신중검토

- 특수교육교원 확보는 교원 정원 사항에 해당하며 「교육기본법」과 「특수교육법」의 취지에 비추어 이를 국가의 책무로 별도 규정하는 것은 법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2. 특수교육대상자의 원격수업을 위한 학교장의 시책 수립 등(안 제21조제5항 신설 등)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일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원격수업(이하 “원격수업”이라 한다)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특수교육대상자의 정보 격차 해소 등을 포함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제5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관련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제6항).

또한,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통합학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수교육교원을 추가로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7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1조(통합교육) ① ~ ④ (생략) <u><신설></u>	제21조(통합교육)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일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원격수업(이하 “원격수업”이라 한다)을 원활히

<신 설> 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학급 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교육교원을 둘 수 있다.	받을 수 있도록 특수교육대상자의 정보 격차 해소 등을 포함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⑦ -----특수교육교원을 추가로-----.
---	--

나. 검토의견

1) 통합교육 원격수업 지원

-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특수학급”과 “통합학급”에서 통합교육이 실시되고 있음⁷⁾.

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11. “특수학급”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한다.

11의2. “통합학급”이란 특수교육대상자와 또래 일반학생이 함께 편성된 학급을 말한다.

□ 현행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이하 “원격교육법”라고 한다)」에서는 교육기관의 장이 원격교육을 운영할 때 원칙으로 학생이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상 장애학생이 원격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책무를 부과하고 있음⁸⁾.

□ 또한 「원격교육법 시행령」에서는 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으로 장애 학생을 규정하면서⁹⁾,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원격교육시스템의 구축 등 학교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때 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장애학생)의 교육 참여 및 학습권 보장을 고려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¹⁰⁾.

8) 「원격교육법」 제3조(기본원칙) 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원격교육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원격교육을 단독으로 운영하거나 대면(對面)교육과 병행함에 있어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기관의 장은 원격교육을 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학생이 신체적·정신적 장애, 생활수준 또는 국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원격교육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며 원격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장애학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이 원격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래 변화에 대응하여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생애주기별 디지털 역량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원격교육 운영과 관련하여 학생 또는 부모 등 보호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것

3. 원격교육 운영과 관련한 교원의 전문성을 존중할 것

9) 「원격교육법 시행령」 제2조(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장애학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이란 교육기관에 재학하는 다음 각 호의 학생을 말한다.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학생

10) 「원격교육법 시행령」 제4조(학교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

□ 이와 관련 교육부는 장애학생 원격교육 플랫폼(열린배움터)이 2021년부터 구축되어 유·초·중·고 관련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음.

□ 따라서 개정안과 동일한 취지의 내용이 「원격교육법」에서 이미 규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개정안 심사시 고려할 필요가 있음¹¹⁾.

[개정안에 대한 관련기관의 의견]

<교육부> 신중검토 ○ 타 법령에 기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추가로 개정하는 사항은 법령의 효용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행정안전부> 신중검토 ○ 개정안의 지자체 예산 지원 의무화는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여 지방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함.
<시·도교육청(광주, 충남)> 신중검토 ○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교원 수급·재정·시설·지원인력 등 제반 여건이 미흡한 만큼 중장기 계획과 인프라 확충을 선행한 후 단계적·탄력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

2) 통합학급을 위한 특수교육교원 배치 기준 마련

□ 현행법은 특수교육대상자와 또래 일반학생이 함께 편성된 학급을 통합

7조제1항에 따라 학교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해야 한다.

2. 제2조에 따른 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 참여 및 학습권 보장

11) 또한, 「원격교육법」은 원격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원격교육법」에 부합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원격교육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원격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학급으로 정의하면서¹²⁾,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학급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교육교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¹³⁾.

- 이에 따라 법 시행령에서는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통합학급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수교육교원(협력교원)을 둘 경우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통합학급을 위한 특수교육교원 배치시 고려 사항]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수2.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3.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여건과 지역적 특성4. 그 밖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학급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 그러나, 시행령에서는 고려사항으로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수”,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학교의 통합학급 외 특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까지 모두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재 공립 특수교육교원의 법정정원 대비 배정정원은 부족한 상황으로,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교원 배치와 달리 통합학급

1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의2. “통합학급”이란 특수교육대상자와 또래 일반학생이 함께 편성된 학급을 말한다.

1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통합교육) 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학급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교육교원을 둘 수 있다.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교원 배치는 재량사항인바, 2025년 기준 전체 일반학교 통합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가 1만 9,532명임에도 불구하고 통합학급을 지원하기 위한 특수교육교원을 두지 않고 있다가, 2026년도부터 통합학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56명의 특수교육교원을 협력교원이랑 명칭으로 배치하게 되었음.¹⁴⁾

<배치유형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단위: 명, %)

특수 학교	일반학교			특수교육 지원센터	계
	특수학급	일반학급	소계		
31,027	69,908	19,532	89,440	268	120,735

자료 : 2025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국립특수교육원)

- ☐

개정안은 통합학급을 지원하기 위한 특수교육교원을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대한 고려 없이 통합학급을 지원하기 위한 특수교육교원을 배치할 수 있는 기준을 시행령에서 마련하게 하려는 것으로, 통합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여건 향상이 기대됨.
- ☐

다만, 개정안은 통합학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교육교원을 “추가”로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데,

14) 모두 공립 통합학급에 배치되었고, 국립(2025년 기준 99개 학급) 및 사립학교(2025년 기준 2,649개 학급)의 통합학급의 경우 배치하지 않았음. 교육부는 2026년 특수교육교원 배치의 경우 중증장애 및 특수교육대상자가 다수 배치된 학급을 기준으로 이루어졌고, 국립 및 사립학교 통합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근거리 배정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특수교육법에서는 상담지원·가족지원·치료지원·지원인력배치·보조공학기기지원·학습보조기기지원·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함.

특수교육교원을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개정 취지에 적합할 것으로 보이며,

현행법에 따르더라도 통합학급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교원 배치시 고려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한 관련기관의 의견]

<교육부> 신중검토

- 통합학급에 특수교육교원을 추가로 둘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개정안은 교원 정원 운영체계와 인력·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3. 특수학교 학급설치 기준 하향 조정(안 제27조제1항)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특수학교 유치원 학급 및 일반유치원 특수학급 학급 당 학생 수를 기존 4인에서 2인으로 하고, 초등학교·중학교 특수학교 학급 및 각급학교 특수학급의 학급 당 학생 수를 기존 6인에서 4인으로, 고등학교는 7인에서 초등학교·중학교와 동일하게 4인으로 낮추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 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 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①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 ----- ----- -----.
1. 유치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u>4인</u>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u>4인</u> 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1. ----- ----- <u>2인</u> ----- ----- ----- <u>2인</u> ----- -----.
2. 초등학교· <u>중학교</u>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u>6인</u> 이하인 경우 1학급	2. ----- <u>중학교·고등학교</u> ----- ----- ----- <u>4인</u> -----

을 설치하고, <u>6인</u> 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 치한다.	-----4인 ----- -----.
<u>3.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 : 특 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7 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 치하고, 7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u> ② (생 략)	<u><삭 제></u> ②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 현행법 제27조제1항¹⁵⁾은 특수학교의 학급과 각급학교의 특수학급을 설치하는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치원 과정, 초등·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별로 특수학급을 설치하는 인원 기준이 정해짐.
- ☐ 구체적으로 현행 규정은 유치원 과정에 대하여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에 1학급을 설치하고, 4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제1호).

1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①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유치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4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2. 초등학교·중학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6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6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3.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7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7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또한,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6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6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하여야 하며(제2호), 고등학교 과정은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7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7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하여야 함(제3호).

□ 개정안은 특수학교 유치원 학급 및 일반유치원 특수학급 학급 당 학생 수를 기존 4인에서 2인으로 하고, 초등학교·중학교 특수학교 학급 및 각급학교 특수학급의 학급 당 학생 수를 기존 6인에서 4인으로, 고등학교는 7인에서 초등학교·중학교와 동일하게 4인으로 낮추려는 것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교육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상 특수학교 학급 설치 기준〕

구 분		설치 학급 수
유치원 과정	현 행	1개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 2개 이상 - 4인 을 초과하는 경우
	개정안	1개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2인 이하인 경우 2개 이상 - 2인 을 초과하는 경우
초등·중학교 과정	현 행	1개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6인 이하인 경우 2개 이상 - 6인 을 초과하는 경우
	개정안	1개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 2개 이상 - 4인 을 초과하는 경우
고등학교 과정	현 행	1개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7인 이하인 경우 2개 이상 - 7인 을 초과하는 경우

□ 다만, 개정안과 같이 학급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경우 ① 학급 신·증설을 위한 추가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하고, ② 증설에 따른 교사 정원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고려하여 개정안을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아울러, 특수학교의 경우 부지확보 곤란 및 님비(NIMBY) 현상 등으로 신설 추진에 한계가 있고¹⁶⁾, 일반학교의 경우에도 도심지 과밀학급 문제 및 특수학급 기피로 인하여 특수학급 증설이 여의치 아니하여¹⁷⁾, 2025년 기준 정원초과학급이 전체 학급 중 9%를 초과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특수학교(급) 정원초과학급 현황 >

2021			2022			2023			2024			2025		
전체 학급	정원 초과 학급	비율	전체 학급	정원 초과 학급	비율	전체 학급	정원 초과 학급	비율	전체 학급	정원 초과 학급	비율	전체 학급	정원 초과 학급	비율
16211	1496	9.2%	17001	1499	8.8%	17759	1,766	9.9%	18552	1,882	10.1%	19253	1,808	9.4%

자료: 교육부

주: 공립 및 사립학교 현황¹⁸⁾

□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4,022억원, 2031년 2,529억원 등 향후 5년간 총 1조 3,846억원(연평균 2,769억원)으로 추계됨.¹⁹⁾

16) 특수학교 “부지 물색만 6년째”...학교 짓는데 ‘반대 급부’ 요구도, KBS뉴스, 2018.10.21.

“명품 동네에 특수학교 안 돼”...성동구 ‘님비’에 장애 학생 교육권 위기, 여성경제신문, 2025.07.18.

17) ‘엄마들 무릎 호소’ 4년 지났지만...여전히 먼 ‘학교 가는 길’, KBS뉴스, 2021.12.10.

경기도내 ‘특수교육 대상자’ 매년 늘지만, 학급 모자라 ‘희망지역 배치율’ 감소, 경인일보, 2025.10.28.

18) 2025년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학교(일반학교) 특수학급의 경우 225개로 전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총 20,370개)의 1.1%에 해당하며, 교육부에서 별도로 정원초과학급 현황을 조사 중임.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2027~2031년) >

(단위: 억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학급 설치 기준 강화 (안 제27조)	4,022	2,383	2,431	2,480	2,529	13,846	2,76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개정안에 대한 관련 기관 의견]

<교육부> 신중검토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학생이나 단순 시·청각장애 학생 등으로 편성된 학급은 현행 수준의 적정 규모 학급에서 사회적 기술 함양 등 보다 나은 교육 성과를 기대할 수 있고, 특수학교의 학생 수용 인원이 대폭 감소하여 장애학생의 원거리 통학 문제 등 교육여건이 악화될 수 있으며, 현행법에 따라서도 두 가지 이상의 심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은 2분의 1의 범위에서 학급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는 점과 특수학교(급)의 학급 설치기준이 되는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학급 신증설에 따른 교원 및 공간 확보 등 물리적 여건 마련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개정안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행정안전부> 신중검토

- 특수학급 설치 기준은 지역별 여건과 장애 정도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교원 확보의 어려움과 교육수요 미반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적용이 필요함

<시·도교육청> 신중검토/일부수정

- (대구, 인천, 전북) 특수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정원 조정과 기준 강화 취지에는 공감하나, 학교 현장의 공간, 인력, 운영 효율성 등 현실적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도 개선과 인프라 확충을 선행한 후 단계적·지역별로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함
- (경기, 충남) 학급당 학생 수 기준 강화 취지에는 공감하나 교실 부족 등 현실적 한계를 고려해 학급 증설 의무화 및 시설 확보 책임 명확화가 필요

19) 설치기준 변경으로 인한 특수교육교원의 추가 배치에 따른 비용추계 미포함.

4. 특수교육교원 배치기준 변경 등(안 제27조의2 신설)

가. 개정안의 요지

- 현행법은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삭제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학교에 특수교육교원을 두도록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제1항),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 2인당 1인으로 하며(제2항),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특수교육교원은 교육부장관이, 단위 학교·학급별 특수교육교원은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가감하여 배치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특수교육교원 1인당 특수교육대상자가 4인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제3항), 특수교육교원을 배치하지 못할 경우 기간제교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4호).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 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③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신 설></u>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 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u><삭 제></u> <u>제27조의2(특수교육교원의 배치</u>

기준)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학교에 특수교육교원을 두어야 한다.

②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 2인당 1인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와 농촌·산촌·어촌 교육의 균형 발전,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및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특수교육교원은 교육부장관이, 단위 학교·학급별 특수교육교원은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가감하여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교육교원 1인당 특수교육대상자가 4인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특수교육교원을 배치하지 못할 경우에

	<u>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배치할 수 있다.</u> <u>⑤ 그 밖에 특수교육교원의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시행령에서는 학생 4명마다 특수교육 담당 교사는 1명으로 규정하고 있음²⁰⁾.
- 개정안은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을 법률에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특수교육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 2인당 1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의 법적 강제력을 강화하여 특수교육교원의 법정정원 확보를 촉진시키고, 특수교육교원 1인당 특수교육대상자 수를 감소시켜 특수교육대상자의 권익을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됨²¹⁾.

2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배치하는 특수교육 담당 교사는 학생 4명마다 1명으로 한다. 다만, 도시와 농촌·산촌·어촌 교육의 균형발전,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현황,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및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현황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별 교사는 교육부장관이, 단위 학교·학급별 교사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배치기준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배치할 수 있다.

[개정안과 시행령의 특수교육교원 배치기준 비교]

개 정 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 특수교육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 <u>2인당 1인</u>으로 함.	- 특수교육 담당 교사는 <u>학생 4명마다 1명</u>으로 함.
- <u>교육부장관(시·도별 특수교육교원) 및 교육감 또는 교육장(단위 학교·학급별 특수교육교원)이 가감하여 배치할 수 있음(단 특수교육교원 1인당 특수교육대상자 4인을 초과할 수 없음).</u> ※ 고려사항 : ①도시와 농촌·산촌·어촌 교육의 균형발전, ②특수교육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③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현황 등	- <u>교육부장관(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별 교사) 및 교육감 또는 교육장(단위 학교·학급별 교사)이 배치기준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배치할 수 있음.</u> ※ 고려사항 : ①도시와 농촌·산촌·어촌 교육의 균형발전, ②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현황, ③특수교육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④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현황 등
- <u>예산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특수교육교원을 배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배치할 수 있음.</u>	-

□ 그러나,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공립 특수교육교원의 경우 법정정원 대비 배정정원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개정안의 경우 법정정원이 대폭 증가하게 되어 배정정원의 법정정원 대비 부족 문제는 더욱

21) 특수교육교원 배치에 관한 법규성을 강화시키고, 특수교육교원 확충 및 배치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시킴으로써 특수교육교원 확충을 위한 정책적 추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국립과 사립 특수교육교원의 경우도 부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유·초·중등의 교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 등에서²²⁾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조직법」도 국가공무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을 법에서 명시하는 것은 법체계와 부합성이 낮은 것으로 보임.²³⁾²⁴⁾

□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 2인당 특수교육교원 1명이 배치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조 977억원, 2031년 1조 3,615억원으로 5년간 총 6조 941억원(연평균 1조 2,188억원)으로 추계됨.²⁵⁾

22) 「초·중등교육법」 제19조(교직원의 구분) ④ 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학교급별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제6조에 따른 지도·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하며,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유아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구분) ③ 유치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배치기준은 제18조에 따른 지도·감독기관이 정하며,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3조(원감을 두지 않을 수 있는 학급 규모 등) ③ 유치원의 학급마다 학급을 담당하는 교사를 1명 이상 두되,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의 경우에는 학급을 담당하는 교사 외에 방과후 과정 운영을 담당하는 교사를 1명 이상 둘 수 있다.

23) 「정부조직법」 제8조(공무원의 정원 등) ① 각 행정기관에 배치할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 공무원배치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각 행정기관에 배치하는 정무직공무원(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에 배치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법률로 정한다.

24) 개정안과 관련하여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75호)」에서는 동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특수학교, 특수학급 및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각급 학교에 두는 특수교육 담당 교원의 배치기준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2027~2031년) >

(단위: 억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특수교육교원 배치 (안 제27조의2)	10,977	11,413	12,097	12,838	13,615	60,941	12,18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개정안에 대한 관련기관 의견 제출]

<교육부> 신중검토

- 현행 법령에서는 공무원 정원과 배치기준, 특수교육교원의 배치 기준, 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의 정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대규모 공무원 정원 확보²⁶⁾가 필요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행안부 등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의견임.

<행정안전부> 신중검토

- 특수교육교원 배치기준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것은 공무원 정원과 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정부조직법」 취지에 반해 인력 운영의 경직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

<시·도교육청> 신중검토/일부수정

- (대구, 인천, 전북) 특수교원 법정정원의 급격한 하향 조정보다는 질적 성장이 함께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 여건 구축이 필요
- (경기, 충남) 특수교육교원 배치 기준은 정원 및 수급 여건을 반영하여 4인당 1인으로 완화하고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75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예지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7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19조(교직원의 구분) ① ~ ④ (생략) <신설>	제19조(교직원의 구분)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교, 제56조에 따른 특수학급 및 제59조에 따른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각급 학교에 두는 특수교육 담당 교원의 배치기준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5) 설치기준 변경으로 인한 특수교육교원의 추가 배치에 따른 비용추계 미포함.

5. 개정안 부칙

가. 개정안의 요지

- 안 부칙은 개정안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학년도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

안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일반적으로 대통령령의 정비가 수반되는 법률의 경우는 6개월, 기관의 설립 및 인력의 채용 등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는 통상적으로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데²⁷⁾, 동 개정안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시책 수립, 특수학교 학급 등 설치 기준 변경, 특수교육교원 배치 기준 변경 및 하위법령(대통령령) 위임 등을 포함하고 있는바,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해서는 유예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26) ※ 개정 시 공립 특수교사 수요 추계('26년 기준)

구분	'26년 정원	개정 시 필요 정원
특수교사 수요	18,046명	36,455명

27) 「법제기준과 실제」(국회사무처, 2024), p.821

문 의 처
02)6788-5186